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9-941호

세운3-7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-119 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60호(2015.07.30.)로 사업시행인가된 세운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1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19. 12. 18. ~ 2020. 1. 2. (15일간)

2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 3396-5753)

3. 공람내용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3-7구역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

- 위 치 : 서울시 중구 산림동 275-3
- 시행면적 : 2,732.20㎡

다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명 칭 :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대표 박래영
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6호(역삼동, 한산1타워빌24) (☎) 2222-5000

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
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. 7. 30.

바. 주요 사업시행변경 내용

- 변경사유 : 기존 사업시행기간 만료(2020.1.30.한)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
- 변경내용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
4. 관계도서 : 세운 3-7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,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9-945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
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12월 1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폐지이유

- 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, 제62조,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전부개정(2005.1.27.)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☐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를 폐지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치수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(예관동), 문의전화:3396-6142, FAX:3396-8853, 메일:ehbaek100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붙임: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[붙임]

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